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대상 펀드

-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 - 재간접형)

□ 변경 사유

-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

□ 변경 내용

*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협회펀드코드	(추가)	<u>종류 A : A5882,</u> <u>종류 I : A5881</u>
제2조(용어의 정의)	[제7호 신설]	7. “종류형”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②[제5호 신설]	② 5. 종류형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[제3항 신설]	③(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)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2. 종류 I 수익증권
제6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.....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좌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..... 설정할 수 있는 <u>수종의</u>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좌로 한다.
제7조(추가신탁)	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.....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종의</u>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.....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8호(신탁금의 납입)	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.....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	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.....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u>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

항목	정정전	정정후
	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 좌수에…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	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좌수에…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	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<u>종류별로</u>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,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</u>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종류A수익증권 2. 종류 I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[제5항 신설]	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제25조(판매가격)	[제1항 신설 및 제2항, 제3항 종류형으로 문구 보완]	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: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. 종류 I 수익증권 :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9조 제5항 제4호, 법 시행령 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(WRAP Account) 또는 특정금전신탁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, 50억 이상 개인, 75억 이상 법인 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</u> 으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

항목	정정전	정정후
		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.)으로 한다.
제27조 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 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 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 [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[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개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[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개시되며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[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을 매일 공고·개시되며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[<u>신규 종류</u>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33조의 2(분배금)	2. 분배기준일: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,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. 단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.	2. 분배기준일: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일로 하며 (<u>신규 종류</u>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,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일), 그 이후에는 매월 20일로 한다. 단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.
제37조(수익자총회)	[제3항 신설]	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

항목	정정전	정정후
		를 개최할 수 있다.
제37조(수익자총회)	제37조(수익자총회) ③~⑧	제37조(수익자총회) ④~⑨순연
제37조(수익자총회)	[제10항 신설]	⑩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로 본다.
제39조 (보수) 제3항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	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</u>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</u>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(종류A)</u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5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8% <u>(종류I)</u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%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8%
제40조 (판매수수료)	①판매회사는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1 범위이내에서 부과한다.	①판매회사는 <u>종류 A 수익증권을</u>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의 100분의 1 범위이내에서 부과한다.
제41조 (환매수수료)제2항	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(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	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(수익의 재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: 30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2. 종류 I 수익증권: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
제42조 (기타운용비용등)제1항 및 제3항	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	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

항목	정정전	정정후
	<p>가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 (단서 신설)</p> <p>(제3항 신설)</p>	<p>여지급한다. 다만,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“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
부칙	(신설)	<p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기발행 수익증권의 종류) 이 신탁계약 변경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으로 본다. 이에 종류 A 수익증권 신규 발행의 경우, 제25조 제2항 및 제3항, 제30조 제2항 및 제33조의 2조 제2호 적용 시 신규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보지 아니한다.</p>

*투자설명서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종류형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류 A : A5882 - 종류 I : A5881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. 특수형태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해당없음	종류형(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종류형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류 A : A5882 - 종류 I : A5881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자료 갱신		2010.10.9 최초 설정 <u>2011.8.2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자료 갱신		운용현황 업데이트(다른 운용 자산규모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. 종류형 구조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-	(추가) 종류형 ※ 당해 종류형 투자신탁의 구조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투자위험등급기준>	주석 일부 문구 보완		(주) 상기의 위험등급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의 자체 기준입니다. 동 위험등급 기준은 정보제공 목적이므로, 투자자는 투자 결정시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본인의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<u>집합투자업자의</u> <u>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</u> <u>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</u> <u>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(추가)	(3)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종류 A : 가입제한 없음 - 종류 I :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(단,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,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),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(WRAP Account) 또는 특정금전신탁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, 50 억 이상 개인, 75 억 이상 법인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매입 (3) 환매수수료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종류 A- 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 종류 I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(추가)	-종류간기준가격이상이한 이유: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산정주기: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.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지하지 아니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1% 이내 환매수수료: 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종류 A -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1% 이내 -환매수수료: 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 종류 I -선취판매수수료: 없음. -환매수수료: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*1000 만원 투자시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 및 자료갱신		-펀드 비용 관련 자료 갱신 및 종류형 전환에 따른 종류 I 관련 비용 추가 -종류 수익증권별 예시 업데이트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분배금 (1)분배금지급방법 2. 분배기준일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	2.분배기준일: 투자신탁 설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설정일 익월 20 일로 하며 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,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기준일은 신규 발행일 익월 20 일), 그 이후에는 매월 20 일로 한다. 단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.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자료 갱신		자료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 자산 규모	자료 갱신		자료 갱신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 총회 등 (1) 수익자총회의 구성	종류형으로 전환에 따른 문구 정정	-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 (추가)	-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 이 때,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

변경 수리일: 2011년 8월 20일

기 타: 자세한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